

2026 『하끝 세법(1쇄)』 추록 및 정오표

2026 『하끝 세법』(1쇄)의 추록 및 정오표를 올립니다. 세법 시행령이 당초 안과 비교하여 일부 수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일부 오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일부 의미가 바뀌지 않는 단순한 자구수정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페이지	수정전	수정후
p9	개인적 공급 :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으로 본다. [예] 명절·근로자의 날·생일 등에 ~	개인적 공급 :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으로 본다. [예] 명절·노동절·생일 등에 ~
p23	① 미가공 ~ ※ 커피 및 커피의 ~과세함 개정 (중전 : '22.6.28.~'25.12.31. 수입분은 면세)	① 미가공 ~ ※ 커피 및 커피의 ~과세함(단, '22.6.28.~'27.12.31. 수입분은 면세) 개정 (면세 2년 연장)
p43	*1) 과세기간 종료 후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1)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p219	42 적격분할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42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p282	32 (주)백두는 각사업연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1) ~ (2) ~ (3) (주)백두는 기계장치에 ~다음과 같다. 제26기에 는 자본적 ~ :</div>	32 (주)백두는 각사업연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1) ~ (2) ~ (3) (주)백두는 기계장치에 ~다음과 같다. 제25기에는 자본적 ~ :</div>
p317	☞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재평가세율 3% 적용분 재평가적립금(적격합병·분할 시 승계한 금액 포함)과 의제배당 재원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함] :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 제외)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한도로 함] 개정안	☞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금액[재평가세율 3% 적용분 재평가적립금(적격합병·분할 시 승계한 금액 포함)과 의제배당 재원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금액은 제외함] :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와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 제외)는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함] 개정
p324	⑪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필요경비불산입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하며,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함)가 있음. 단, 미가입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2025년까지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를 업무사용금액으로 함.	⑪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필요경비불산입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하며,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함)가 있음. 내용 삭제
p335	③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p382	② 특수관계법인 ~있는 경우 개정 ~==~증여재산가액 또는 배당·상여·기타~	② 특수관계법인 ~있는 경우 개정 ~==~증여재산가액 또는 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된 ~
p395	18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8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p549	55 과세표준과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	55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안 경우라도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